

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

■ 특수장소의 소방시설

-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, 유지(법30조)

■ 기준 적용의 특례(법31조)

□ 법령의 변경으로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: 종전 규정 적용

- * 단, 소화기구·비상경보설비·자동화재속보설비·유도등·유도표지·피난기구는 변경된 기준 적용

□ 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(영33조의2)

- 증축되는 경우 : 기존부분을 포함하여 증축 당시 기준 적용

- * 단, 방화구획시 기존 부분은 면제

- 용도변경의 경우 : 용도변경 부분에 한하여 변경된 기준 적용

- * 단, 화재 위험이 높은 용도에서 낮은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, 기존 부분이 종전 기준에 적합하면 그 기준 적용

※ 화재 위험이 높은 용도에서 낮은 용도로 변경되는 요건 기준(고시1994-97호, 95.1.6)

1. 연소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화재 진압활동이 용이하게 변경될 경우
2. 불특정 다수인 이용 시설이 일정 근무자 이용 용도로 변경될 경우
3. 가연성 내장재 등의 양이 줄어든 경우
4. A 용도에서 A 이외의 용도로 변경될 경우

- * A 용도 :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· 일반음식점 · 노래연습장 · 단란주점 · 비디오방, 위락 시설, 관람 · 집회시설, 판매시설, 숙박시설, 노유자시설, 의료시설, 가스시설, 종교 시설,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

※ 소방시설 적용의 특례(영34조)

- 화재경계지구 내 : 옥외소화전 등 추가설치 요구가능
- 불연재료 사용의 화재위험 낮은 공장(정수 · 펄프 · 음료수 · 석재 · 불연금속 · 불연창고) : 소방시설 면제 가능
- 가스시설에 물분무장치 등을 설치한 경우 : 연결살수설비 설치 면제 가능

※ 소방시설의 면제(영33조)

- 상위개념의 설비 설치시 면제